



제428회국회(임사회)
제2차 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수송시설 이용지원 비용 70% 이상 국가 보조〉

■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848, 2210849,
2210851, 2210852호)

2025. 8.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 개 요	1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II . 검토의견: 수송시설 이용지원 비용 70% 이상 국가 보조	5
※ 참고자료	15

I. 개 요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1) 제안자 : 신장식의원 등 12인

(2) 제안일 : 2025. 6. 16.

(3) 회부일 : 2025. 6. 1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정하는 한편, 수송시설 이용료를 무료 또는 할인하여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조율이 충분하지 않아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을 실시하는데에 어려움이 있고,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을 제공함에도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기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명확히 하여 이들에게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조율이 100분의 7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게 하여 국가유공자에게 충분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66조).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안자 : 신장식의원 등 12인
- (2) 제안일 : 2025. 6. 16.
- (3) 회부일 : 2025. 6. 1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유공자를 대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정하는 한편, 수송시설 이용료를 무료 또는 할인하여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조율이 충분하지 않아 독립유공자를 대상으로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을 실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을 제공함에도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기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명확히 하여 이들에게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조율이 100분의 7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게 하여 독립유공자에게 충분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22조).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안자 : 신장식의원 등 12인
- (2) 제안일 : 2025. 6. 16.
- (3) 회부일 : 2025. 6. 1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를 대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정하는 한편, 수송시설 이용료를 무료 또는 할인하여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조율이 충분하지 않아 특수임무유공자를 대상으로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을 실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을 제공함에도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기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명확히 하여 이들에게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조율이 100분의 7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게 하여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충분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73조).

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안자 : 신장식의원 등 12인
- (2) 제안일 : 2025. 6. 16.
- (3) 회부일 : 2025. 6. 1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18민주유공자를 대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정하는 한편, 수송시설 이용료를 무료 또는 할인하여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조율이 충분하지 않아 5·18민주유공자를 대상으로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을 실시하는데에 어려움이 있고,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을 제공함에도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기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명확히 하여 이들에게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조율이 100분의 7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게 하여 5·18민주유공자에게 충분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87조).

II. 검토의견: 수송시설 이용지원 비용 70% 이상 국가 보조

- 4건의 개정안¹⁾은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실시하고 있음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들 기관에 대한 국가의 수송시설 이용지원 보조율을 70% 이상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제66조(수송시설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의 수송시설(輸送施設) 이용료 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제66조(수송시설의 이용지원) ① ----- ----- ----- <u>· 한</u> <u>국 철 도 공 사(「한 국 철 도 공 사</u> <u>법」 제2조에 따른 한국철도공</u> <u>사를 말한다) 및 도시철도공사</u> <u>(「도시철도법」 제2조제4호에</u> <u>따른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u> <u>「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u> <u>된 지방공사를 말한다)</u> ----- ----- -----.
1. 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②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48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49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51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52호)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송 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후단 신설>	----- ----- ----- ----- -----, 이 경우 보조금은 이용액의 100분의 7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수송시설의 이용지원) ① 독립유공자 및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독립유공자를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 요금을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제22조(수송시설의 이용지원) ① ----- ----- ----- ----- ----- -----,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철도공사를 말한다) 및 도시철도공사(「도시철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 -----.

② 국가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후단 신설>	-----. ② ----- ----- ----- ----- ----- ----- -. 이 경우 보조금은 이용액의 100분의 7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제87조(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① 5·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輸送施設)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u>지방자치단체</u>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제87조(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① ----- ----- ----- -----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철도공사를 말한다) 및 도시철도공사(「도시철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

② 국가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후단 신설>	-----. ② ----- ----- ----- ----- ----- --. 이 경우 보조금은 이용액의 100분의 7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과 동승보호자 1인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지원하고, 요금 감면을 제공한 자에게는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공공기관²⁾ 중 고속철도의 보조율은 30% 수준³⁾에 머무르고 있고, 도시철도의 경우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지 못해 운송사업자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수송시설의 이용대상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6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한국철도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인 도시철도공사를 말한다.

3) 고속철도 최근 3년 보조율: 2024년 33.7%, 2023년 34.8%, 2022년 29.7%

<보훈대상자 수송시설 이용지원 근거 법률>

근거 법률	감면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국가유공상이자 및 상이등급 1급 유공자의 동승보호자 1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8조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장해등급 1급 부상자의 동승보호자 1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독립유공자 및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독립유공자의 동승보호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3조	특수임무부상자 및 상이등급 1급 부상자의 동승보호자 1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4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및 상이등급 1급 대상자의 동승보호자 1인

<수송시설별 지원 근거 및 평균 보조율>

지원 근거	수송시설	최근 5년 평균 보조율
법령	열차(KTX·SRT 포함)	36.9%
	지하철	-
계약	시내버스(농어촌버스)	62.8%
	시외버스	
	고속버스	
	내항여객선	100%
회사 자율	국내선 항공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
	국제여객선	-

자료: 국가보훈부

□ 이에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이들 기관에 대한 국가의 보조율이 70% 이상이 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수송기관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공익서비스제공을 위한 재원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개정안에 따라 국가가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요금 감면분의 70%를 보조하는 경우 향후 5년간 총 383억 7,800만원(연평균 76억 7,5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가재정 부담 증가와 이에 따른 재원 마련 등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고속철도	대상인원	118,211	117,348	116,491	115,641	114,797	-	-
	이용금액	6,569	6,610	6,651	6,692	6,734	-	-
	보조금 추계액(보조율 70%)	4,599	4,627	4,656	4,685	4,714	-	-
	추가재정소요('25 예산 기준)	2,436	2,464	2,493	2,522	2,551	12,466	2,493
도시철도	대상인원	118,211	117,349	116,493	115,643	114,800	-	-
	이용금액	7,512	7,458	7,403	7,349	7,296	-	-
	추가보조율	70%	70%	70%	70%	70%	-	-
	추가재정소요	5,259	5,220	5,182	5,144	5,107	25,912	5,182
합계		7,695	7,684	7,675	7,666	7,658	38,378	7,675

* 대상인원은 애국지사·상이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보훈보상대상자 등을 포함, 2025년 기준 인원(119,080명)에 연평균증감률(△0.73%)를 적용

** 이용금액은 고속철도의 경우 2024년 기준 1인 평균 이용단가(54,092원)에 연평균인상률(1.36%)을 적용하고, 도시철도의 경우 연평균 이용횟수(41회)와 이용단가(1,550원)를 각각 적용

*** '25년 고속철도 보조금 예산은 2,163백만원

자료: 국가보훈부

4) 공공기관 수송시설 이용지원 비용에 대한 보조율을 상향할 경우, 계약에 따라 지원하는 민영버스나 업체가 자율적으로 지원하는 항공기 등도 국고 지원 상향을 요구할 수 있음.

- 둘째, 장애인 및 노인(65세 이상)도 「노인복지법」⁵⁾과 「장애인복지법」⁶⁾에 따라 수송시설을 무료 이용하거나 감면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수송 비용 보전 문제는 국가유공자 등뿐 아니라 장애인 및 노인에 대한 수송시설 지원 체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운송비용 감면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⁷⁾과 장애인·노인의 운임을 감면하는 운송사업자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⁸⁾이 각각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이용요금 감면대상자 현황>

'24.12.31. 기준

구 분	근거법률	대상자(비율)
65세 이상 노인	「노인복지법」 제26조	994만명(78.33%)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0조	263만명(20.72%)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등	12만명(0.95%)

자료: 국가보훈부

- 5)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6)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7)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268호
8) 이현승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4465호 및 제2204466호

- 셋째, 법 체계 측면에서, 개정안과 같이 보조금의 지급을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게 하는 것은 비록 단순 노력 의무 규정에 불과하더라도 국가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보조금 대상 사업과 국고 보조율을 매년 예산으로 정하도록 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⁹⁾ 규정과 상충될 여지가 있음.

또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공공기관을 법률에서 직접 열거하는 경우 교통 환경 변화 등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¹⁰⁾.

- 그 밖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3. 7. 시행)¹¹⁾으로 보훈보상대상자도 수송시설 이용 지원 대상자가 되었으므로 개정안을 받아들이는 경우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음¹²⁾.

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①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류,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
2.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 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

10)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등 사회복지 관련 법령도 수송시설 감면 대상 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4(수송시설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1.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경우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2) 2025.8.4. 동일한 취지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1953호)을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함.

- 국가보훈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도시·고속철도 감면 이용 대상자인 노인, 장애인과의 재정지원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기획재정부는 보조금 지원은 법률에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보조금의 대상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국고보조금 일반법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편성·집행하고 있어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 국토교통부는 도시철도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시설로, 운임 감면 시행 여부 및 운영기관 지원 등은 운영주체인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항이므로, 시설의 운영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07

참 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제도 현황

구분		이 용 대 상	할인율	
공공기관	열차 (KTX·SRT 포함)	· 애국지사 · 상이국가유공자(1~7급) ·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 보훈보상대상자(지원공상포함, 1~7급)	연간 6회 무임 후 50% 할인	
	지 하 철	· 애국지사 · 상이국가유공자(1~7급) ·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 보훈보상대상자(지원공상포함, 1~7급) * 보훈보상(지원공상) 비공공기관 수송시설인 민 영노선(공항철도, 신분당선) 제외	무 임	
비공공기관	버	시내버스 *좌석·광역 (급행)·마을 버스 제외 농어촌버스	· 애국지사 · 상이국가유공자(1~7급) ·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무 임
		시외버스	· 애국지사 · 1-5급 상이국가유공자 · 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70% 할인
			· 6-7급 상이국가유공자 · 8-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30% 할인
	스	고속버스 * 프리미엄 고속버스 제외	· 애국지사 · 1-5급 상이국가유공자 · 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0% 할인
			· 6-7급 상이국가유공자 · 8-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30% 할인
	국내 여객선	· 애국지사 · 1-5급 상이국가유공자 · 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무 임 육상거주자: 연 6회 도서거주자: 연 12회	
		· 6-7급 상이국가유공자 · 8-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0% 할인 육상거주자: 연 6회 도서거주자: 연 12회	
	국내선항공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 애국지사 · 상이국가유공자(1~7급) ·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50% 할인	
		· 참전유공자 등 비상이 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수권유족	30% 할인	
	국제여객선	· 애국지사 · 상이국가유공자(1~7급) ·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20% 할인 * 한국 ↔ 중국 및 일 본(한국 발권 선권에 한함) * 일본노선의 경우 선 사별 차이	

자료: 국가보훈부